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3.20(월) 14:00 이후	배포	2017.3.20(월)	

책임자	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당자	이인욱 서기관 (02-2100-2831) 정태호 사무관 (02-2100-2833)
	전자금융과장 김 연 준(02-2100-2970)		김원태 사무관(02-2100-2971)
	은행과장 김 진 흥(02-2100-2950)		이수암 사무관(02-2100-2676)

제 목 : 「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」 출범 및 「금융규제 테스트베드」 도입방안 마련

-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·관합동 TF 출범**
 - 1차 회의에서 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(3.20.)**를 마련하고, 향후 TF 논의를 통해 **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(2분기)** 및 **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종합 대응방향(3분기)** 등도 마련할 계획
- 금융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적용할 수 있는 「금융규제 테스트베드」 도입**
 - **비조치의견서 활용(3월~)**, 금융회사를 통한 **위탁테스트 방식(2분기~)**, **지정대리인 자격 부여방식(3분기~)** 등 허용

1.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

□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`17.3.20일 금융위, 금감원, 한은, KDI, 금융연·보험연·자본연, 민간전문가 등과 「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」 1차 회의를 개최

<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개요>

- ◇ 일시/장소 : `17.3.20(월) 14:0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◇ 참석자 :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위 사무처장, 금감원 부원장보, 한은 통화금융연구실장, 민간위원(명단 별첨)
- ◇ 논의내용 :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운영방향,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,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

- 동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,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·발표함

- ◇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「금융규제 테스트베드」 도입

- ①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, ②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, ③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
-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(Waiver)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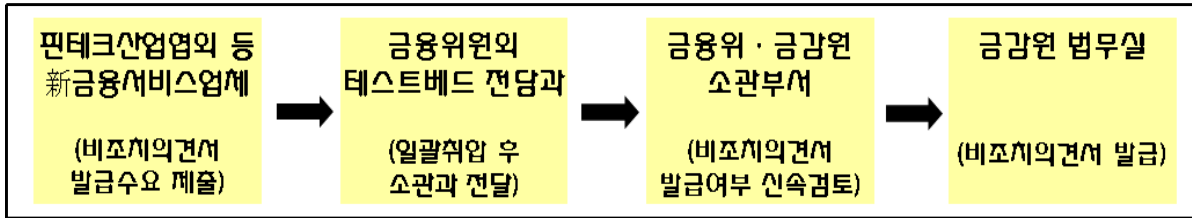
가 비조치의견서 활용

- (개념)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

<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(예시, 참고3)>

-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
 - 현황 :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App이 개발되었으나,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
 -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: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 허용

- (추진체계) 금융위/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



- (향후 일정)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 회신

나 |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

- (개념)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
- (추진체계) 산은·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
- (향후 일정)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체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하여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 추진

<위탁테스트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(예시, 참고3)>

-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
 - 현황 :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되었으나,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 간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이 어려움
 -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: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(예:정책금융기관)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,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

다 |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

- (개념)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“지정대리인” 자격을 부여하고,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

- (추진체계) 금융위·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“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” 운영
 -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, 심의회 검토*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 확정
 - * 검토요소 : 해당서비스의 혁신성,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, 소비자편의 기여도, 업체의 준비상황(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) 등
- (향후 일정)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명확화 (‘17.3분기중 업무위탁규정 개정)
 - 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개시
 - ※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한 후, 1차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 추진

2. 기타 회의 논의사항

가

부위원장 모두말씀

- 정은보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응전략·비전 수립*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,
 - * 미국(대형IT 기업 주도, 정부는 인프라 지원), 독일(‘15.4월 Industry 4.0), 일본(‘16.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), 중국(‘15.5월 중국제조 2025) 등
 - * 우리나라도 「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」 출범(2.22일)
- 특히, 금융 분야는 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,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(→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)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파괴적(disruptive) 변화의 바람 속에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*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
 - * 예) ① 탈중개화(전통적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약화), ② 분산된 금융 인프라(블록체인 등), ③ 빅데이터 혁명(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맞춤형 서비스), ④ 금융플랫폼 주도(플랫폼 선점의 중요성) 등

□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강조하였음

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·인프라 체계 정비
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

② 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*하고, 빅데이터,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

* 「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」을 2분기중(잠정) 마련

③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

* 창업·벤처 활성화,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

④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

<향후 TF 검토과제 (예시)>

□ 4차 산업혁명 대비 법·제도 개편 대응

○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 검토

○ 4차 산업혁명 대비 지급결제·예탁제도 등 금융인프라 개편

○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 보완 등 (예: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, 정보보안 등)

□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

○ AI, 빅데이터, 자율주행차, 3D 프린트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

○ 미래 신성장분야 관련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

○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

□ 금융분야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추진

○ 블록체인 등 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 마련

○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

○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

가.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

- (공급주체)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공급 방식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, 사물인터넷, 플랫폼 등 신기술 개발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능별로 세분화(Unbundle)*될 전망

* (예) ① 보험업 : 보험상품 개발(사물인터넷 업체), 심사 및 지급(AI 업체)
 ② 은행업 : 지급결제(핀테크 업체), 대출(p2p업체), 자산관리(로보어드바이저)

- (편익과 비용) 블록체인, 간편결제 등 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 서비스 공급비용이 절감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전망

- 그러나, 기계의 진화에 따른 단순업무의 대체로 금융부문 전반적인 일자리는 축소될 가능성

- (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)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, 디지털을 중심으로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,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

나. 금융산업별 영향

- (은행) 핀테크 혁명으로 언제, 어디서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지며 빅데이터 혁명으로 금융소외계층도 대출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은행수요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

- 그러나 은행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분산화, 외주화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모델은 도전에 직면

- 서비스 제공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증대

- (보험)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향후 보험서비스는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에서 사고발생 전 생활관리 서비스로 진화

-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, 기존의 범용 보험상품 대신 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'Order Made' 보험상품이 활발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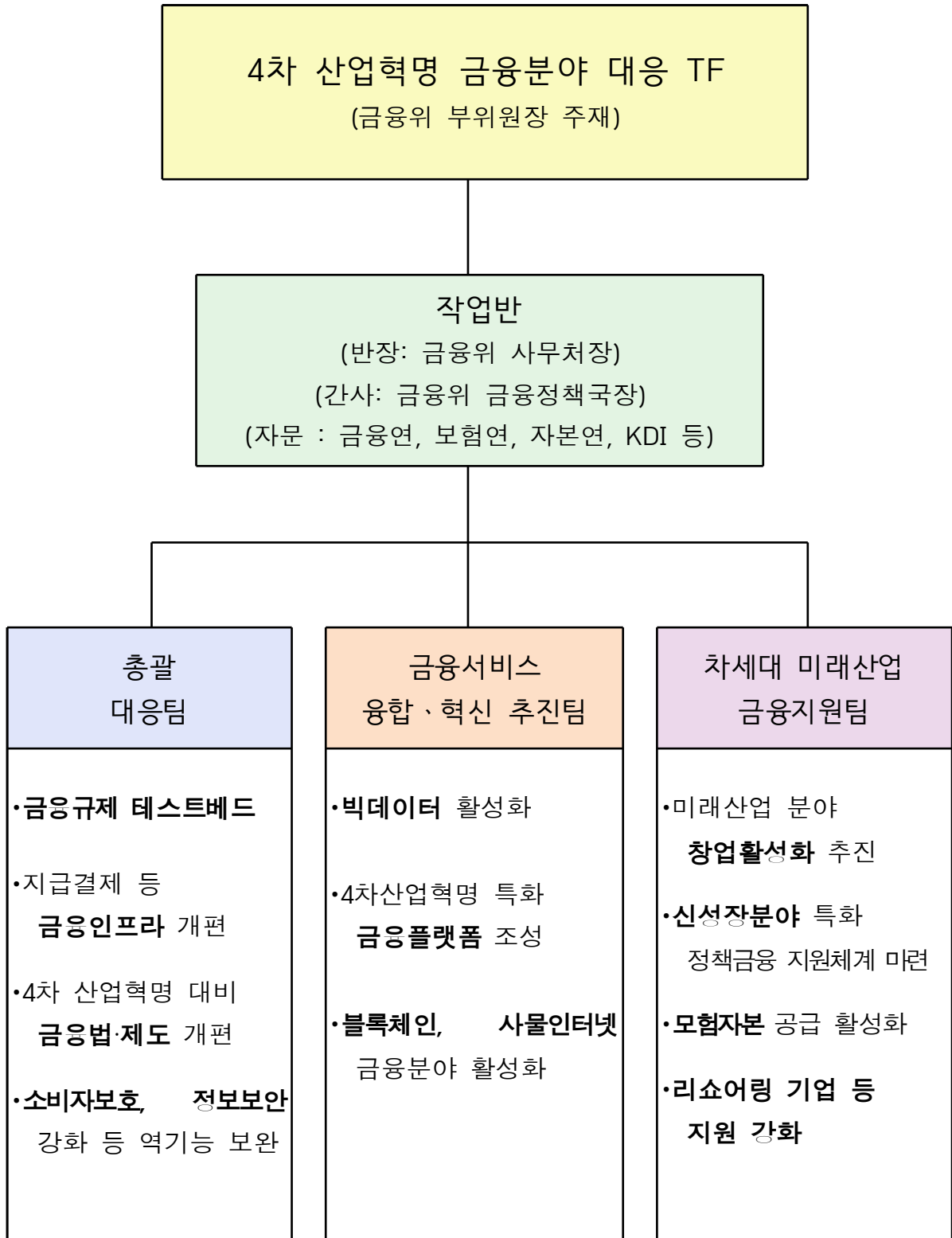
- IoT, 헬스케어 업체 등과 보험회사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임
- 보험업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진출 및 보험가입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등은 향후 규제이슈로 대두 가능
- (자본시장) 투자자 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펀딩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로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
 - 우리나라는 전체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양호한 편이나,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 금융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를 견인하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
-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같은 고급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장외거래의 처리비용과 속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

다.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

- (금융 혁신) 금융회사와 혁신적 핀테크 업체 간에 상호 협업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금융혁신 선순환 생태계* 필요
 - * (금융회사)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솔루션 활용 ↔ (핀테크 업체) 금융업 노하우 취득
- 미래 금융서비스의 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도 마련될 필요
- (혁신적 신산업지원) 혁신적 신산업 분야의 자금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·벤처금융 지원체계 필요
 - 국내에 부족한 엔젤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업-투자자 간 동반자금융 체계도 완비 필요
- (역기능 대응)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4차산업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'RegTech*' 활성화
 - * 4차산업 신기술을 금융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
: (예)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개발
 -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자본시장감시 등에 빅데이터 등 활용
 - 가상현실 기반의 모의투자·피싱방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활용

- [첨부] 1.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말씀
2.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대응 TF 운영방향
3.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<p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 <p>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</p>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

* 각 팀은 금융위 담당국장, 금감원 담당 부원장보, 연구원 등으로 구성 (필요시 한국은행,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탄력적으로 참여)

참고 2

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민간위원 명단

성명	현직
정유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■ 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
김원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
안수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배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나금융연구소 소장
전성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한금융지주 부장 (디지털전략팀장)
김수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Mckinsey 글로벌전략 컨설턴트(파트너)
이대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연구원 은행·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
김석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실장
이효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
구자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KDI 금융산업실 연구위원

①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

□ (현황) 오프라인 카드결제단말기 대신 스마트폰에 깔려져 있는 App을 카드결제기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출시수요 존재

○ 상용화시 영세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운 판매자들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□ (규제애로사항) 여전법(§27의4)에 따라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맞추어 여전협회에 등록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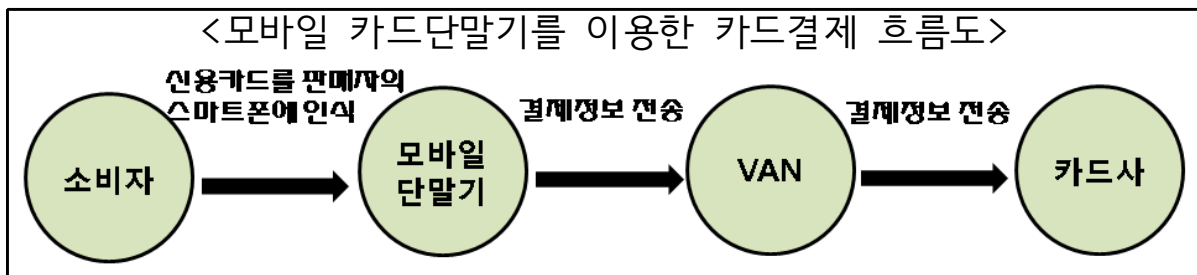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, 현재 여전협회 기술 기준은 오프라인 기기의 검증과 관련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App 기반 카드단말기 인증이 불가능

⇒ 모바일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에 등록할 수 없어 이를 활용한 카드결제서비스 제공시 여전법을 위반하는 문제 발생

※ 단말기 인증이 안 되므로 VAN사와의 결제망 연결도 불가능

□ (테스트베드 운영방안)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일정한 요건* 하에 제공하는 경우 여전협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회신

*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서비스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회신방향 결정



□ (소비자보호) 결제정보 전송오류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 시행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

○ 사고발생시 여전법상 카드단말기사업자와 동일한 제재조치 부과

②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

□ (현황) 피싱 등 신종사기거래의 경우 고객이 자의로 상대방에게 자금을 이체하게 되므로 일단 이체를 한 후에는 권리구제가 어려움

- 이에 일부 핀테크 업체는 고객이 수취인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계좌의 사기거래 이용 이력을 보여주어 이체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프로그램 개발

<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예시>

이체내용확인
▼

출금계좌번호	입금은행	입금계좌번호	입금계좌 예금주명	이체금액	수수료	수정	삭제
646-000000-00-000	기업은행(003)	123-000000-00-000	홍길동	1	0	수정	삭제
합계금액				1 원	0 원		

※ 입금은행 계좌번호는 전자금융 피해이력이 존재합니다. 피해이력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[피해이력 열람하기]
기업은행은 고객님의 전자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□ (규제애로사항) 금융실명법(§4)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위수탁에 따라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불가능

- “금융회사등”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는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시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

⇒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야 고객의 사기입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

□ (테스트베드 운영방안) 사기거래방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정책 금융기관(예시)에게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위탁

- “금융회사등”인 정책금융기관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계좌에 대한 이체 여부 사전확인 가능

□ (소비자보호)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프로그램을 위탁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담

-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사후 구상청구 가능